

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해저조광권 소멸 후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등¹⁾이 ① 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또는 활용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, ②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, ③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·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²⁾을 충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의2제1항)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원상회복 면제사유를 ‘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탄소중립의 실현,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는 에너지·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’로 규정하고 있음.

1)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, 시설물, 그 밖의 장비

2) 탄소중립 실현,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는 에너지·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

- 그런데 원상회복 면제의 목적(탄소중립의 실현,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는 에너지·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)과 면제 대상사업(제3호부터 제5호까지)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,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’도 모호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.
- 또한, 원상회복 면제대상인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면제 당시의 사정 변경으로 인공구조물등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동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. 이에 산업통상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.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19조의2(원상회복)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, 시설물, 그 밖의 장비(이하 “인공구조물등”이라 한다)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</u> 그러하지 아니한다.	제19조의2(원상회복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----- <u>제1호 및 제2호는</u> ----- ----- <u>경우에,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탄소중립의 실현,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여가 인</u>	제19조의2(원상회복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</u> 그러하지 아니한다.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1. 2. (생략) <신설> <신설> <신설>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원	<u>정되는 에너지·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</u>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해당 인공구조물등이 「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포집, 수송, 저장 또는 활용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</u> 4. 「<u>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·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----- 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	1. 2. (현행과 같음) 3. (개정안과 같음) 4. (개정안과 같음) 5. (개정안과 같음) ③ ----- 제2항 및 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----- -----.	----- -----. ④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의 실현, 해양환경의 보전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산업통상부장관은 면제 당시의 사정 변경으로 인공구조물등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면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(전문위원 박 혜 진)